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Deposit Guidelines for Online Digital Materials

곽승진 (Seung-Jin Kwak)**, 김정택 (Jeong-Taek Kim)***

박옥남 (Ok-Nam Park)****, 최재황 (Jae-Hwang Choi)*****

목 차

- | | |
|-------------------------|----------------------------|
| 1. 서 론 | 2.7 납본에 대한 보상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8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
| 1.2 연구 방법 | 2.9 납본주체 |
|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 2.10 납본기관과 의무 |
| 2.1 납본 범위 | 2.11 납본주체의 납본거절 및 이용거절 |
| 2.2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 2.12 납본된 자료의 갱신 및 폐기 |
| 2.3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 2.13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
| 2.4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 2.14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
| 2.5 납본 자료의 수집 | |
| 2.6 납본 자료의 이용 | 3. 결 론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망라적 수집과 보존 그리고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국내·외 법령 및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의 납본 이해 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 단체 및 기업, 이용자, 그리고 납본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기관이 납본 받아야 할 범위를 규정한 납본 범위에서 납본 불이행 시 납본주체에 대한 제재까지 총 14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elements and guidelines for online digital materials in order to ensure its comprehensiv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access in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elements and guidelines, this study examined appropriate advanced countries' legal deposit Acts, discussed with stakeholders, including experts and copyrighters in related areas, and surveyed library users' opinion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14 elements and guidelines.

키워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납본체계, 납본요소, 가이드라인

Online Digital Materials, Legal Deposit, Legal Deposit System, Elements of Legal Deposit, Guidelines

* 본 연구는 2012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용역과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부교수(sjkwak@cnu.ac.kr) (제1저자)

*** 배재대학교 도서관 사서(kjt@pcu.ac.kr) (공동저자)

**** 상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onda@smu.ac.kr)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i@k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3년 7월 15일 최초심사일자: 2013년 8월 9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8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3): 161-179, 2013.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3.16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당대는 물론 후대에서도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국의 자료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국가도서관들은 자국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납본제도를 활용해 왔다. 한편, 오랜 세월동안 정보자료의 주종이 되어왔던 인쇄자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 납본제도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홈페이지의 대중화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급증으로 포괄적 국가문헌 수집도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현행 납본제도의 보완 또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적합한 새로운 납본제도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과 보존 가치가 증대되면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필요성을 인식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발적 납본을 계획하거나 웹사이트 자동 수집을 실행하는 등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 및 연구를 수년간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가치 있는 인터넷 자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집·축적하여 미래 세대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디지털자료 수집보존 사업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프로젝트를(www.oasis.go.kr)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는 「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제20조의 2항(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보존가

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의 수집·보존'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자료의 납본 현황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보다 능동적인 디지털자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한 법제화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국가의 디지털 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국민에게 이용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본업무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디지털 문화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실태조사, 면담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조사로서 디지털자료 납본정책, 납본법 및 기술적 문제 관련 국내외 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법률 제정(legislation)에 의해 온라인 출판물을 납본 받는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핀란드 등의 국가도서관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참고문헌 참조).

실태조사로서 디지털자료(전자도서, 웹정보자료, 음악파일, 동영상, 이미지, 각종 전자문서 등)의 유통 현황과 출판계, 도서관계, 음악계, 영화, 신문, 학술잡지, 학위논문, 소프트웨어 단

체 등 유통 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면담조사로서 디지털자료 납본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11월 12일-16일이었다. 조사대상은 전자출판(한국전자출판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교보문고, 메키아), 음악(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영상(한국영상산업협회) 분야였고,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포맷, 수량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대상자료 및 제외 대상자료의 종류와 범위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방법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주체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시기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 보상금 정도 및 지급방법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범위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하드카피 생산 범위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사 여부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활성화 방안
- 납본법 개정방안
- 기존 도서관법의 효과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이용자 200명(일반이용자 191명, 정보소외계층 이용자 9명)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19-23일 사이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 유형 중 주로 이용하는 유형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 허용범위
-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정보소외계층 이용 허용범위
- 모바일을 사용하여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 모바일을 사용하여 이용하였으면 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법조계 2인, 출판계 2인, 전자출판계 1인, 도서유통계 1인, 도서관계 1인, 문헌정보학계 1인) 그룹과 3차(2012년 10월 31일, 2012년 11월 14일, 2012년 12월 7일)에 걸친 자문을 받고 도출된 의견을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범위는 디지털자료 중 오프라인 디지털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정의하며 정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동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 양자를 포함한다. 정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완결되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자저널의 기사, 전자책 등이며 동적인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등을 의미한다.

2.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우리나라는 2009년에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과 제20조의 2(온라인자료의 수집),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 및 ③항과 제13조의 2(온

라인자료의 수집)가 개정되면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보존을 위한 출발점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 및 ③항을 제외하면 자국의 국가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법정 납본이 아니며 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의무를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 「도서관법」 제20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과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②항 및 ③항 또한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납본된 인쇄 자료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여 납본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제도를 법제화하고 납본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 가이드라인 요소는 다음의 14가지이다.

- ① 납본 범위
- ②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 ③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 ④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 ⑤ 납본 자료의 수집
- ⑥ 납본 자료의 이용
- ⑦ 납본에 대한 보상
- ⑧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 ⑨ 납본주체
- ⑩ 납본기관과 의무
- ⑪ 납본주체의 납본거절 및 이용거절

- ⑫ 납본된 자료의 갱신 및 폐기
- ⑬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 ⑭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2.1 납본 범위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인쇄자료나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에 비해 납본 범위 설정이 쉽지 않다. 이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국적판별 기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납본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인터넷 주소, 언어, 저자, 발신자 또는 수취인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디지털자료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국내로 특정하여 지정된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 ② 국내에 공표될 목적으로 외국의 인터넷 주소에서 출판되었거나 제공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 ③ 국내 거주자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자가 인터넷에서 공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2.2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과 우선순위

본 연구에서는 납본 제외대상 자료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납본대상 자료의 유형을 전

지출판, 디지털 음악, 디지털 방송, 디지털 영상, 이미지, 이러닝, 정보콘텐츠, 게임으로 제시하며 납본의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1차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이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동일 조건이라면 자료의 수명주기가 짧은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동일 조건이라면 수집이 용이한 자료부터 수집한다.
- 동일 조건이라면 공개접근이 가능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처음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출판된 자료를 인쇄자료의 전자버전에 우선하여 수집한다. 즉, 인쇄본이 없는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외국에서 국내에 공표할 목적으로 출판된 자료보다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동일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제작 시기나 포맷이 다르면 가장 최근에 출판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 동일 내용의 자료가 여러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포맷을 우선 수집한다.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그리고 그 산하 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료를 우선 수집한다.

납본기관(납본을 받는 기관)은 납본대상 자료의 납본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납본 우선순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용자들이 주로 어떤 유형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하는지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지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2.3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은 납본 범위에 명시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납본 의무가 면제된 자료 유형을 의미한다. 납본 제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무가치한 자료
- 인트라넷 등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는 자료
- 제한된 집단의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자료
- 용량 또는 성격상 기술적으로 보존이 불가능한 자료
- 사회 통념상 수집과 보존에 현저한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자료
- 납본주체(출판사 등)의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렵거나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료
- 납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납본기관에 의해 명시된 출판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료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자료

납본 제외대상 자료의 유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는 자료의 유형으로는 동일 출판사가 이미 납본한 인쇄자료와 정확하게 동일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쇄자료와 정확하게 동일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도 이용 편의성 등의 장점을 고려하여 납본 대상 자료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다만 이 판단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납본기관의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4 납본 포맷, 납본 시점, 납본 부수

2.4.1 납본 포맷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제작 포맷이 매우 다양하여 특정 포맷을 납본 포맷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포맷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포맷, 즉 현재의 보편적인 출판 포맷으로 납본되어야 한다.
- 동일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html, pdf, epub 등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모든 파일 포맷이 납본되어야 한다. 단, 동일 납본주체에 의해 동일 내용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었고 이용자들이 시각·청각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납본기관과 납본주체 간 합의 하에 그 중 하나의 포맷만 납본할 수 있다.
- 동일한 자료가 인쇄포맷과 전자포맷 두 가지 포맷으로 출판되었다면 두 가지 포맷 다 납본되어야 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된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해당 디지털 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을 납본주체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디지털자료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4.2 납본 시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 조사에서는 A 협회만 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시하였을 뿐 나머지 이해 당사자들은 최소 60일 또는 그 이상을 납본 시점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다음과 같다.

- 인쇄자료 및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을 납본의무 발생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발행일 또는 제작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인도 쉽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발생일은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대중에게 공표한 날로 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은 인쇄자료에 적용되는 납본시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우리나라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서는 공공기관, 개인, 단체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시점도 대중에게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2.4.3 납본 부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부수는 1부로 한다.

2.5 납본 자료의 수집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수집방법에 따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으로 구분된다. 자동수집 납본은 인터넷에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상으로 자동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복제하는 납본방법으로 선택적 수집방법과 망라적 수집방법 두 가지가 있다.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은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납본주체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송신 또는 기록 매체에 고정하여 납본기관에 송부하는 납본방법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선행연구, 이해 당사자 면담, 이용자 설문 결과를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납본 자료 수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웹크롤러에 의한 자동수집 납본과 납본주체에 의한 의무적 납본을 통해 수집

하여야 한다. 인터넷에 공표되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자동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집하며, 선택적 수집방법과 망라적 수집방법 두 가지를 상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¹⁾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OASIS 시스템은 자동수집 방법에 의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자동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 납본주체가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온라인상에서 송신하거나 기록 매체에 고정하여 우편 등의 방법으로 납본기관에 송부하는 의무적 납본 방법을 통해 수집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온라인상에서 업로드를 통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 이해 당사자들도 납본할 자료의 제출방법으로 업로드를 가장 선호하였다.
- 납본기관은 자동수집 납본과 의무적 납본을 불문하고 사전에 수집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납본주체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하기 전과 납본할 때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납본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납본하기 전]

-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포함된 암호

1) 선택적 수집 방법은 각각의 웹상에 존재하는 자료에 대하여 사이트 단위 또는 자료단위로 선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매우 세밀한 아카이브 구축이 가능하지만, 하나하나 수집하게 되므로 막대한 인적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적은 양의 아카이브 밖에 구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망라적 수집은 대부분 자동화 할 수 있으므로 낮은 비용으로 대규모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으나 저작권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옥석을 가릴 수 없는 아카이브가 되고 만다는 단점이 있다.

를 해제하여야 한다.

-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나 장치는 제거되거나 불용화 되어야 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기술적 보호조치 등에 의하여 자동수집이 제한되는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납본 시]

-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자 또는 납본주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그 사본이 제출되어야 한다.
-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매뉴얼을 포함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 이용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타 정보의 사본은 제출되어야 한다.
-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표제, 저작자, 언어, 출판일, 판형, 주제, 저작권 정보 등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메타데이터는 제출되어야 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장애인의 이용에 적합하지 않을 시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장애인이 이용하기 용이한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가로 제출할 것을 납본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

리나 이러한 요청에 소요되는 비용은 납본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납본기관과 납본주체는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허락 범위, 시기 등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에 제공하지 못한다.
- 납본기관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 받은 즉시 해당 납본주체에게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식별자가 포함된 증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2.6 납본 자료의 이용

납본 입법지침에는 납본된 전자 자료의 이용을 보장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은 납본주체의 경제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에 대한 입법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납본 자료의 이용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납본 자료의 이용에 대한 이해 당사자 면담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단순열람의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동의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 관내 다운로드의 경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립중앙도서관 관외 이용의 경우에도 단순열람이든 다운로드든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정보소외계층이 이용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전제 하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정보소외계층(장애인, 산간·낙도 거주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년층)에 이용시킨다면 어느 선까지 허용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반인의 이용에 대한 의견과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허용범위에 대한 이용자 설문에서는 이해 당사자 면담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일반 이용자 이용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 관내·관외, 단순열람·다운로드를 불문하고 응답자 중 과반 수 이상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해 당사자 면담, 이용자설문 내용을 참조하여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 받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에게 두 가지 종류의 접근수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제시한다. 두 가지 접근수준은 공개접근²⁾과 제한접근³⁾이며 납본주체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본하여야 한다. 납본기관은 납본주체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본할 수 있도록 납본체계 및 납본시스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를 납본 받은 후에 해당 자료의 이용여부 및 범위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납본 받는 첫 단계에서 해당 자료의 이용여부 및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 받은 즉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한다.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비록 그 자료가 상업용일지라도 납본 받은 즉시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공개접근 온라인 디지털자료라 할지라도 자료의 보존을 위해 인위적으로 자료를 변경한 경우 납본기관의 관내·관간·관외를 불문하고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용과 비상업용으로 구분된다. 비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은 되었으나 납본주체에 의해 이용이 거절되었거나 제한된 경우이며 납본기관은 납본주체의 요구에 따라 보존만하거나 제한된 이용에만 제공하여야 한다. 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은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⁴⁾와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납본주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용조건을 결정하여야 한다.
-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특정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

2) 납본주체가 자신이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공중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제한 없이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접근수준이다.

3) 납본주체가 자신이 납본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하여 공중의 이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하는데 제한을 두는 접근수준이다.

4) 이용보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지만 납본보상금은 지급한 상태.

공할 때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납본기관은 시각장애인용으로 납본된 특정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도 관내에서 한 번에 하나의 컴퓨터 터미널로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이용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관내 이용은 납본기관이 필요한 동시 이용자 수만큼 이용자 라이선스를 납본주체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이용에 제공한다. 관외 이용의 경우, 관내 이용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동시 이용자 수만큼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이용에 제공할 수는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이 관외 이용에 필요로 하는 동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계의 생존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관외 이용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은 해당 업계의 이해 당사자 면담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관외 이용의 또 다른 방법으로 B2C 방식의 건당 비용 지불(pay per view)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해당 업계에서 이미 일반 대중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납본기관이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성격의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건당 비용 지불 방식에 의한 관외 이용은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정보소외계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국립중앙도서관 방문이 쉽지 않은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건당 비용 지불 방식의 관외 이용만이라도 해당 업계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상업용 접근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增高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납본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금이 필요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별도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고 이용시킨다. 그러나 별도계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는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한다.
- 납본기관은 접근수준과는 상관없이 납본된 전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납본된 자료의 검토 및 유지, 납본기관의 자체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이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거나 해당 업계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납본주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에 따라 허락받은 이용 범위, 시기 등의 조건 이외의 방법으로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2.7 납본에 대한 보상

우리나라 「도서관법」에서는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에는 그 온라인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본 보상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이용을 배제한 보존 목적으로만 납본되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로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납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인쇄자료에 대한 현행 납본제도에서도 보존목적으로 납본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일 경우에는 보존과 이용에 관계없이 납본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납본주체가 관내 이용을 허락한 경우 판매 정가의 100%를 지급한다.
- 상업적으로 판매되고 정가가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이지만 납본기관이 예산상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납본주체가 통상적인 가격이 아닌 임의의 가격을 제시한 경우 판매 정가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단, 납본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액이거나 납본보상금을 노리고 출판된 자료라는 의심이 들 경우 납본을 거부할 수 있다.
-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우선 무보상으로 납본받아 보존한 후,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유통되면 그 유통가격의 100% 또는 별도 보상기준에 따라 납본보상금을 지급한 후 관내에서 이용시킨다.
- 상업적 목적으로 제작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든 완전 공개되거나 공표된 비매품 자료이든 납본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납본주체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는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자료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납본자료 생산비

용은 납본주체의 청구에 의해 지급될 수 있으며 납본주체는 청구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8 납본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에 대한 보상은 공개접근과 제한접근으로 범주화한 후 상업용 자료, 완전공개·공표된 비매품, 가격 미결정 자료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상업용 자료는 정가 책정 자료와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로 세분화 될 수 있다.

- 공개접근을 통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상업용 자료, 완전공개·공표된 비매품, 가격 미결정 자료를 불문하고 기본적으로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에 대한 보상은 다음과 같다.
 - 동시 이용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납본보상금으로 이용보상을 갈음한다.
 - 동시 이용자 수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한다.
 - 전자저널, 웹 데이터베이스 등 패키지 형태로 판매되는 자료의 경우 Site License 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한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의 경우, 정보소외계층 이용에 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제공하며 별도 계약에 의해 이용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내 이용 보상방안과 동일하나 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으로 인하여 납본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금이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에 의해 적정가를 보상하며 별도 계약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는 이용에 제공하지 않고 보존만 한다.

-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고액 및 임의적 가격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에 대한 보상은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관외 이용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 접근제한 가격 미결정 자료는 관내·관외를 불문하고 가격 미결정 상태에서는 보상하지 않으며, 추후 가격이 결정된 후 제한접근 상업용 자료(정가 책정 자료)의 이용 보상 방안과 동일하게 보상한다.
- 이용보상금 지급 주기는 납본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연 단위 이상의 주기로 이용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2.9 납본주체

인쇄자료의 경우 출판사를 납본주체로 명시하거나 한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다양한 주체(저자, 지식소유권자, 출판사, 제작자, 유통·배포자 등)가 생산 및 유통과정에 참여하므로 납본주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납본주체는 이러한 다양한 납본 관련 주체 중 누가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요소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대한민국에 할당된 인터넷 도메인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출판된 도메인명의 등록자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도메인명의 등록자가 출판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납본의무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에게 부과한다. 여기에서 출판자라 함은 온라인 디지털자료 객체를 제작하였으며 유통 및 배포 과정에서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을 의미한다.
- 국내에 공표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경우에도 출판자에게 납본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수입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납본주체가 파산한 경우 납본의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파산관재인 등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에게 부여한다.
- 납본주체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납본주체가 사망하였고, 상속인도 없는 경우 납본주체는 국가가 된다.

저자 등 저작권자를 배제하고 도메인명의 등록자 또는 출판자를 납본주체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도메인명의 등록자 또는 출판자가 납본할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물리적 객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저작권자가 납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저작권자는 출판사로부터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물리적 객체와 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계받아 납본해야 하는데 이는 저작권자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이로 인해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상당수가 납본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저작권자를 납본주체로 규정한다면 납본을 받기 위한 인력과 시간 그리고 예산의 낭비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사의 전자저널 패키지가 1,000종이라면 납본기관은 연간 60,000명[1,000종 × 4(계간) × 15(권 당 15편의 논문 수록)]의 저자로부터 납본을 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과 시간, 예산의 낭비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상당 수 이해 당사자의 의견과 달리 유통업체를 납본주체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특정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출판자는 하나이지만 유통업체는 여러 곳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납본주체를 규정하는 것은 납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자를 규정하는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납본을 위한 납본방법이나 납본대행자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10 납본기관과 의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이다. 우리나라도 인쇄자료와 오프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다. 국내 법령과 이해 당사자 의견을 참조하여 납본기관과 그 의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기관은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정한 곳으로 한다.
-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기관은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한 정책목표와 기본계획 수립
 - ②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홍보
 - ③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납본시스템 개발 및 보안체제 구축
 - ④ 납본대상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 및 정리
 - ⑤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위한 제반 서비스 제공
 - ⑥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상
 - ⑦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 ⑧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무결성 및 진본성 확보
 - ⑨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⑩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재원 확보
 - ⑪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 ⑫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보호
 - ⑬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의무 미 이행에 대한 제재

- ⑭ 그 밖에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11 납본주체의 납본거절 및 이용거절

납본주체의 납본거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납본으로 인하여 납본주체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주체는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납본거절 의사를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표시할 수 있다.
- 납본주체가 납본거절 의사를 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여부는 납본의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납본기관이 설치한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때 납본주체는 납본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를 위원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이 납본주체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결된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의무를 면제하여야 하며 자동수집에 의해 기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삭제하여야 한다.

납본주체가 납본한 자료의 이용거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온라인 디지털 자료의 납본주체는 납본한

자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납본자료의 이용이 납본주체의 적법한 이해관계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납본주체가 허락한 범위, 시기 등의 이용 조건을 납본기관이 위반한 경우 등이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등은 공공복리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납본기관의 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온라인 또는 문서로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 납본 자료에 대한 이용거절 의사 표시는 최소한 30일 전에 하여야 하며, 이용거절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납본주체가 이용거절 의사를 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 여부는 일차적으로 납본기관에서 이용거절 의사 표시 사유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이용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 납본기관에 의해 이용거절 의사 표시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면 납본기관은 납본의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단체가 일정 부분 참여하고 납본기관이 설치한 별도의 위원회에 이를 상정하여야 한다. 이때 납본주체는 이용거절 의사 표시의 사유를 위원회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거절 의사 표시가 정당하다고 의결된 경우 납본기관은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이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의 포맷만 보존하고 나머지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납본기관이 보존하는 포맷은 납본기관의 보존 목적 및 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납본된 자료의 갱신 및 폐기

납본된 자료의 갱신 및 폐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동일한 인터넷 주소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는 수시갱신을 통하여 각 시점별로 축적하여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자책, 학술저널 기사 등과 같이 고정형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새로운 버전으로 출판되어 납본될 경우, 납본기관은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로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대체할 수 있다.
- 납본기관은 새로운 버전으로 출판된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될 경우, 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검토한 후 폐기할 수 있다.
- 납본기관은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와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 중 기존 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납본기관의 보존 목적에 보다 적합하다면 새로이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
- 납본기관은 동일 납본주체에 의해 동일 내용이 복수의 파일 포맷으로 출판되어 납본되고, 납본된 복수의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이용자들이 시각·청각적인 측면에서 차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중 하나

2.13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복본 생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납본된 자료의 영구보존이 어려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본주체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납본자료의 영구보존 및 납본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납본제도 개선 시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복본 생산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납본기관은 개별 출판물의 진본성과 무결성의 보존을 조건으로, 보존 목적만을 위하여 다른 매체에 출판물을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최재황, 광승진, 김정택 2009).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13조에서도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면담에 응한 이해 당사자들도 납본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였다. 따라서 납본된 자료의 보존을 위한 복본의 생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납본기관은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체에 한하여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주기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 납본자료를 장애인 이용에 활용한 경우, 납본기관은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변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변형도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형 사실과 변형된 온라인 디지털 자료 콘텐츠를 납본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본자료의 보존 및 교체를 위한 복제 권한은 법률 등에 의거 납본기관에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납본된 디지털자료를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납본기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납본자료 이용에 한하여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를 변형할 권한을 납본기관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이러한 변형도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변형 사실과 변형된 온라인 디지털자료 콘텐츠를 추후에 납본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은 전제되어야 한다. 장애인 납본자료 이용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본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변형은 납본주체와의 합의가 있지 않은 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납본주체와 합의되지 않은 변형은 저작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납본기관이 새로운 제작자가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2.14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납본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가장 현실적인 제재 방법은 과태료 부과이다. 과태료 부가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고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미 납본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납본기관은 납본 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 당사자들과의 다각적인 협의와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납본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인쇄자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 정가(온라인 디지털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해당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를 부과하며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부과·징수한 과태료의 사용처는 납본되지 않은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구입에 한한다.

3. 결론

2009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연구논문에서 인용된 웹 인용문헌의 1/3은 '찾을 수 없음'으로 나타났다고 보고된바 있다(Bhat 2009). 모든 도서관은 전자출판물의 동향을 감안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장서에 편입시켜 현재의 이용자를 위한 접근환경을 조성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보존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특히 국가도서관은 자국의 출판물을 망라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국

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당대는 물론 후대가 자료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의 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천적 수단 중 가장 강력하면서도 실효성이 높은 제도적 장치가 납본제도이다. 납본제도는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지적 출판물을 국가대표도서관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는 제도이다.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은 자료 포맷의 다양성, 수록된 정보의 가변성과 소멸성, 저작권 보호 장치의 미비성 등으로 국가적 수준에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되어야 한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온라인 디지털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용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제도를 시급하게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 및 이용

에 관한 법제화와 납본을 위한 기술적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 요소별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가이드라인은 총 14개로 구성하였으며, 추후 법제화 및 납본체계 구축과정에서 납본기관과 납본주체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제도의 법제화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시스템의 개발이다. 본 연구에서는 납본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ISO 14721 OAIIS(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s) 참조모형을 적용할 것과 납본과정뿐만 아니라 납본 이후의 품질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구를 납본제도의 법제화와 병행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1] 박승진, 최재황, 조영주, 류희경. 2008. 디지털자료 납본에 대한 보상 체계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65-83.
- [2] 국립중앙도서관. 2012.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3] 노영희. 2009. 국내외 국가도서관 납본절차 분석을 통한 납본업무의 합리적 운영방안 도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4): 171-189.
- [4] 장보성, 남영준. 2010. 온라인 전자책 보존을 위한 납본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4): 435-456.
- [5] 최재황, 박승진, 김정택. 2009.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209-232.
- [6] Bhat, Mohammad Hanief. 2009. "Missing Web References - A Case Study of Five Scholarly

- Journals.” *Liber Quarterly*, 19(2): 131-139.
- [7] British Library. 2013. The Legal Deposit Libraries(Non-print works) Regulations. [cited 2012.11.8].
〈http://www.culture.gov.uk/images/consultations/Legal_deposit_Draft_Regulations.pdf〉.
- [8] German National Library(Deutsche National Bibliothek).
Gesetz über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DNBG). [cited 2013.4.13].
〈<http://www.gesetze-im-internet.de/dnbg/BJNR133800006.html>〉.
- [9] German National Library(Deutsche National Bibliothek).
Verordnung über die Pflichtablieferung von Medienwerken an die Deutsche Nationalbibliothek. [cited 2013.4.13].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pflav/gesamt.pdf>〉.
- [10] Gibby, Richard, & Caroline Brazier. 2012. “Observations on the development of non-print legal deposit in the UK.” *Library Review*, 61(5): 362-377.
- [11] Government of Canada. An Act to establish the Library and Archives of Canada. [cited 2013.4.9].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L-7.7/index.html>〉.
- [12] Government of Canada. Legal Deposit of Publications Regulations (SOR/2006-337). [cited 2013.4.9].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L-7.7/index.html>〉.
- [13] Milne, Ronald, & John Tuck. 2008. Implementing E-Legal Deposit: A British Library Perspective. *Ariadne Issue 57*. [cited 2013.4.7].
〈<http://www.ariadne.ac.uk/issue57/milne-tuck>〉
- [14] National Diet Library. Legal Deposit System. [cited 2012.11.7].
〈<http://www.ndl.go.jp/en/aboutus/deposit.html>〉.
- [15] National Library of France. Digital legal deposit: four questions about Web Archiving at the BnF. [cited 2012.11.9].
〈http://www.bnf.fr/en/professionals/digital_legal_deposit/a.digital_legal_deposit_web_archiving.html〉.
- [16] National Library of France. Digital legal deposit. [cited 2012.11.9].
〈http://www.bnf.fr/en/professionals/digital_legal_deposit.html〉.
- [17]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Introduction to Legal Deposit. [cited 2012.11.14].
〈<http://www.natlib.govt.nz/services/get-advice/publishers/legal-deposit>〉.
- [18] National Library of New Zealand. 2006. National Library Requirement(Electronic Documents) Notice. [cited 2012.11.14].
〈<http://legislation.govt.nz/regulation/public/2006/0118/latest/DLM381515.html>〉.
- [19] National Library of Finland Legal Deposits to the National Library of Finland.

- [cited 2012.11.15]. <<http://www.nationallibrary.fi/publishers/deposit.html>>.
- [20] National Library of Netherlands. e-Depot and digital perservation. [cited 2012.11.19]. <<http://www.kb.nl/en/expertise/e-depot-and-digital-preservation>>.
- [21] National Library of Sweden, A step closer to e-legal deposit. [cited 2012.11.27]. <<http://www.kb.se/english/about/news/A-step-closer-to-e-legal-deposit>>.
- [22] National Library of Sweden. Digital Deposit: a project 2005-2006. [cited 2012.11.29]. <<http://www.kb.se/english/about/projects/digital>>.
- [23] National Library of Sweden. New decree for Kulturarw3. [cited 2012.11.29]. <<http://web.archive.org/web/20020803234652/>>, <http://www.kb.se/Info/Pressmed/Arkiv/2002/020605_eng.htm>.
- [24] Vahtola, Aija. Finnish web-archive and digital legal deposit copies. [cited 2012.12.4]. <http://arbicon.ru/conference/2011/media/files/presentations/pdf/22_Vahtola.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wak, Seung-Jin, Choi Jae-Hwang, Cho, Young-Joo, & Ryu, Hee-Kyeng. 2008. "A Study on Reimbursement for Legal Deposit of Digital Product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65-83.
- [2]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The Enactment Study of Legal Deposit for Online Digital Materials*.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 [3] Noh, Younghee. 2009. "Suggesting the Reasonable Legal Deposit Operating Plan through Analyzing the Legal Deposit Process of National Libraries of the Worl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0(4): 171-189.
- [4] Jang, Bo-Seong, & Nam, Young-Joon. 2010. "Research on Improvements of the Legal Deposit System for the Preservation of Online Electronic Boo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4): 435-456.
- [5] Choi, Jae-Hwang, Kwak, Seung-Jin, & Kim, Jeong-Taek. 2009.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209-232.

